

第243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議錄 第 3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 9月17日(水)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朴赫圭 위원

(노동부)

1. 사업비에서 인건비로의 전용문제

2002년도 노동부 예산집행을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로의 전용이 일반회계 전용액 22억 1900만 원 중 83.3%에 해당하는 18억 48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나 불용액을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경직성 경비로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음에도 매년 전용을 반복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년 도	예산현액 (A)	전체 전용액 (B)	인건비 전용액 (C)	비 율 (C/B)
2000년	658,928	10,233	811	7.9%
2001년	685,990	93,754	1,907	2.0%
2002년	627,372	2,219	1,848	83.3%

특히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비인 여성가장 실업자취업훈련사업비(감액 전용액 2억 원),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경비 등 민생지원 경비를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로 전

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2002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인건비 운영에 있어서 정원보다 적게 운영하여 발생한 불용액을 다른 인건비로 전용하는 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

특히 직업상담원의 결원 운영으로 집행되지 않은 직업인건비 등에서 공무원의 인건비적 경비 등으로 전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인건비(비정규직 보수)는 71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64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지방노동관서 인건비성 경비로 5300만 원이 이용되었으며, 2억 44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 4억 2300만 원은 일반직원의 인건비 부족액 충당 재원으로 전용되었는데 이는 검토보고서의 지적처럼 자칫 일반직원 인건비의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득의 수단으로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또한 노동부가 직업상담원에 대한 대우 등에 부처내 혼란과 갈등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아 보이는 데 비정규직 운영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서 자체 내의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2001년	총 계		2,201명	1,919명	208명	178명	1,949명
	일반 회계	소 계	1,886명				1,869명
		고용관리	1,500명				1,789명
		직업안정기관 확충 운영	386명				80명
		고용보험기금	315명				80명

2002년	총 계		2,057명	1,949명	-	128명	1,821명		
	일반 회계	소 계					1,742명		1,700명
		고용관리					1,356명		1,344명
		직업안정기관 확충 운영					386명		356명
		고용보험기금					315명		121명
2003년	총 계		1,850명	1,821명	-	24명	1,797명	'03.7.2 현재 직업상담원 은 1,797명임	
	일반회계		1,850명				1,797명		

더욱이 근로감독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연례적으로 정원미달로 운영되어 불용과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 24억 3600만 원은 근로감독관 1036명(정원 1076명 중 지방노동사무소장 40명 제외)을 대상으로 편성된 것이나 실제로 운용된 근로감독관은 2002년 12월 말 기준으로 92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만약 3억 3600만 원이 지방노동관서 인건비로 전용되지 않았다면 총 3억 6200만 원이 불용됨으로써

전체예산 중 거의 15%가 불용되는 결과입니다.

2002년 5월 기준의 경우 노동부 전체결원이 104명이고 근로감독관 결원이 152명인데 전체결원에 비하여 근로감독관결원이 48명을 초과하고 있으나 2003년 4월 기준의 경우 노동부 전체결원이 9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 결원은 82명에 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근로감독관 충원에 대한 의지가 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부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는데 논리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5급 이상		6~7급		8급	
		'02.5	'03.4	'02.5	'03.4	'02.5	'03.4	'02.5	'03.4
노동부 전체 정·현원 현황	정원	2,740	2,742	501	503	1,454	1,454	785	785
	현원	2,636	2,733	487	504	1,398	1,452	751	777
	결원	△104	△9	△14	1	△56	△2	△34	△7
근로감독관 정·현원 현황	정원	1,076	1,076	150	150	852	852	74	74
	현원	924	994	146	147	736	786	42	61
	결원	△152	△82	△4	△3	△116	△66	△32	△13

노동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적절한 인력으로 업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노동서비스 질 제고와 민원인의 만족을 유도할 수 있으나 2002년도 감독관 1인당 신고사건 처리건수가 적정처리건수인 109건을 초과하는 234건으로 나타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원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적절한 인력운영방안이 무엇인지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직업상담원의 경비 등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이용 및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생산적 복지 - 자활사업 부진문제

노동부소관 자활사업으로 자활직업훈련 200억 원 자활구직세일즈 112억 2000만 원, 직업안정기관확충에 78억 600만 원 등 총 390억 26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예산현액 232억 원 중 163억 원이 집행되고 36억 원이 이월되었고 33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직업적응훈련(1만 5000명)은 당초 계획인원의 43%인 6449명을 실시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활구직세일즈는 112억 원(8000명)을 편성하여 23억 원(1457명)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79.1%인 88억 8000만 원으로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명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이체액				
○국민기초생활 보장자활지원	39,026	3,625	-	△477	42,174	25,797	3,601	12,776
- 자활직업훈련	20,000	3,217	-	-	23,217	16,297	3,601	3,319
- 자활구직세일즈	11,220	-	-	-	11,220	2,340	-	8,880
- 직업안정기관 확충 운영	7,806	-	-	△477	7,329	6,889	-	440
- 자활인턴제	-	408	-	-	408	271	-	137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인원과 취업률이 증가하였으나 취업률이 12.7%에 불과하고 중도탈락률이 이년에 15.2%에서 '02년도에 18.8%로 높아져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도탈락의 가장 큰 이유가 생계유지로 나타나고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할 유인책 및 인프라 마련이 훈련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데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같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활사업대상자의 45%가 여성이고 15%가 편부모 가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훈련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훈련 참여율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훈련기관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훈련대상 특성별로 충분한 고려없이 기존의 정형화된 훈련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져 자활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한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직업적응훈련 및 자활구직세일즈의 경우 실적이 저조하고 예산의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자체로부터 의뢰받는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취업대상자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결국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자초했다는 보는데 앞으로 대상자 규모에 대한 적절한 예측이 필요한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의 문제점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11억 6900만 원을 포함하여 811억 6900만 원으로 이 중 610억 8900만 원이 지출되고 157억 7500만 원(19.4%)이 이

월되었으며 43억 500만 원(53%)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과 중도탈락률 등에 의한 불용액은 전년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이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많아 적정한 사업대상규모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 확보에만 매달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선발인원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신규 졸업자의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능력의 배양이라는 이 제도 자체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량실업에 따른 실업자 양적 감소라는 일시적인 실업대책으로 전략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직 채용자의 약 40%가 근무기간 1년 이전에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유지성을 고려한 순고용 효과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턴제 효과관계에 대해 장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 감사원의 결산감사의 지적처럼 2002년에 연수지원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민간기업의 지원인원을 5000명,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3만 명을 배정하는 등 목표인원을 불합리하게 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결과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관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살릴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연수참가자의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조사대상의 80%의 기관에서 정규직의 업무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데 그쳐 다양한 현장경험과 실무능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수지원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단순지원업무만 수행해서는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능력배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턴제의 경우 사업 목적상 좀 더 취업이 곤란한 계층에게 더 많은 직장체험 기회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실업문제가 대졸자에 집중되어 온 결과 인턴제의 경우 실시대상자중 01년에 36.4%, 02년도에 29.8%정도만 고졸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졸이하나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

1. 모성보호 지원 실효성 미흡

산전후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집행액 1232억 1200만 원 중 불과 18.3%인 226억 200만 원이 지출되고 1006억 1000만 원이 불용되고 고용기금으로 마련한 재원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모성보호 제도의 실효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158,965 (15,000)	-	-	158,965 (15,000)	25,689	-	133,276
산전후휴가급여	123,212 (15,000)	-	-	123,212 (15,000)	22,602	-	100,610
육아휴직급여	35,753	-	-	35,753	3,087	-	32,666

2002년도 산전후휴가급여는 2만 2711명에게 226억 200만 원을 지급하여 예산집행률이 18.3%에 불과하고 육아휴직급여는 3763명에게 30억 8700만 원을 지급하여 예산집행실적이 8.6%로 매우 부진합니다.

2002년도 한국노총이 발표한 조합원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법개정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노동자가 78.4%나 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지원금액이 적어서였고

노동연구원이 2002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50%가 대체인력이 없거나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고 24.8%가 신청해도 회사가 받아줄 가능성이 없어 서로 나타나 현행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노동부의 엄정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8년 이후 모성보호 이행실태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 사업장이 아직은 적어 적절한 감독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실효성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2. 고용안정사업의 전반적 부진문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고용유지 및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실업을 예방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고용안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은 수입대비 21.5%에 머물고 있어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률은 44.6%로 2001년도 57.59%보다 더욱 부진하였는데 기업이 경영이 악화되면 고용유지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감원을 선호하고 있어 차후에 이에 대한 과감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전직지원장려금도 목표 대비 실적률이 0.88%로 2001년도 4.30% 보다 더욱 부진한데 이는 당초 이직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7월에 도입된 동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지원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가 복잡하다는 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직지원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영여건이 취약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상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02년도 지원사업장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은 31곳으로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 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활용도가 낮는데 이

는 사업주가 구조조정과정에서 이직시킨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경우도 전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재취업하기를 바라지 않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1회 160~200만 원을 지원하므로 기업은 재고용보다는 신규채용을 선호하게 되는 자체의 불합리성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장관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극히 부진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2002년도 5.7%, 2001년도 : 7.87%),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2002년도 : 14.2%, '01년도 : 4.68%)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또는 사업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단 위	금 액	단 위	금 액	
고용유지지원금	343,729명	73,399	152,384	32,729	44.6
전직지원장려금	59,073명	51,689	7,408	432	0.8
재고용장려금	658명	1,240	270	506	40.8
채용장려금	3,488명	1,373	3,488	1,373	100.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61,552명	44,557	270,902	39,980	89.7
여성고용촉진장려금	358,574명	71,992	3,433	4,099	5.7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83,681명	50,209	13,558	7,154	14.2
보육교사임금지원	4,042명	2,483	1,511	2,483	100.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	44개소	2,000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40,000명	2,400	21,621	1,295	54.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10개소	2,000	2	450	22.5

○吳世勳 위원
(노동부)

불용액 문제

2002년도 노동부 예산 중 쓰지 못하고 불용된 금액은 총 281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273억 7200만 원의 4.5%에 해당됩니다.

노동부 예산은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상황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지출의 규모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진행될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281억 5600만 원 중 사업부진에 의한 불용액이 192억 52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부의 예산편성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창업 및 취업훈련지원사업, 자활직업훈련사

업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사업의 불용액의 비율이 전체 예산현액의 10%를 넘는다는 것은 노동부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사업예산의 산출근거와 사업실행의 가능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부처를 위해 우선은 따놓고 보자는 마음이 아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산상의 행태는 전체 국가재원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몰고가 결국 국가의 에너지 중 중요한 부분을 비효율적으로 이용 낭비하는 결과와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在馨 위원
(노동부)

1.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의 부진(세항 1641)

'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01년부터 시작된 자활사업에 대한 '02년 집행 실적을 보면, 조건부수급자 중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취업대상자를 선발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02년 신규로 계상된 자활구직세일즈사업은 분기당 2000명씩 총 8000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18.2%인 1457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당초 예산액 112억 2200만 원 중 20.9%인 23억 4000만 원이 집행되고, 79.1%인 88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직업적응훈련을 포함한 자활직업훈련사업도 예산현액 344억 3700만 원 중 45.9%인 158억 원이 이월 또는 불용되어 부진한 실적을 보였으며,

'01년의 경우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활관련예산 858억 원 중 8.4%인 72억 3900만 원만 집행되고 86.2%가 전용(감)되는 등 연례적으로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02~'02 자활관련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이월	전 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01	자활인턴 ('01 종료)	30,000	0	△28,000	2,000	889	408	703
	자활직업훈련	55,800	0	△46,000	9,800	6,350	3,217	233
	계	85,800	0	△74,000	11,800	7,239	3625	936
'02	자활구직세일즈 ('02 신규)	11,200	0	0	11,220	2,340	0	8,880
	자활직업훈련	20,000	3,217	0	23,217	16,297	3,600	3,320
	계	31,200	3,217	0	34,437	18,637	3,600	12,200

집행부진사유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자활구직세일즈사업의 경우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보충급여제(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미달액 전액을 지급)¹⁾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자활직업적응훈련의 경우에는 당초 1만 5000명을 계획하였으나 43.0%인 6449명에만 실시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는 보충급여제로 인한 근로유인의 한계에 대한 인식 미비, 직업훈련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소득활동을 우선시하는 자활대상자의 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표본조사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자활직업훈련의 경우 특히 수료인원 3703명 대비

취업 인원이 490명으로 취업률이 13.2%에 불과하였는 바 그 원인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훈련수료 후 실제로 취업을 하였더라도 생계급여 지원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직업훈련 수료직후 바로 취업하지 않고 여타 자활사업(자활취업촉진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직업이동경로에 대한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여 동 훈련사업의 방법과 내용의 개선도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유지율(6개월이상 일 자리를 유지한 구직자수/취업한 구직자수) 등의 통계도 공표하여 동 사업의 성과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해 보십시오.

1) 예를 들어 만약 35만 원의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가구는 부부가 둘다 일해도 총 소득이 70만 원에 불과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일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93만 원을 지급받는 편이 더 낫다.

<'01~'02 자활직업훈련 실시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계획인원	실시인원	훈련중 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중도 탈락인원	중도탈락률	
'01	15,000	5,555	2,372	2,190	278	842	15.2	
'02	총 계	5,000	7,651	4,574	3,703	490	1,439	18.8
	상반기	2,500	3,583	2,230	818	80	471	13.1
	하반기	2,500	4,068	2,344	2,885	410	968	23.8

<'02 자활직업훈련 성별·학력별·연령별 실시현황>

실시 인원	성 별		학 력 별			연 령 별					
	남	여	고졸 이하	2년 대졸	4년대 졸이상	25세~ 미만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9 세	50세~ 이상
7,651	2,829	4,822	6,887	378	386	2,200	429	875	1,180	2,172	795
100%	37%	63%	90%	5%	5%	29%	6%	11%	15%	28%	10%

2. 고용보험기금의 연례적인 수입과소 및 지출 과대계상에 따른 기금운용상 손실 발생 문제

'0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실적은 7조 5952억 원으로 당초 계획 2조 7699억 원 대비 2.7배가 증가되고 있으며, '01년도에도 당초 계획 대비 86.5%가 증가한 4조 8656억 원, '00년도에도 당초계획 대비 44.1%가 증가한 3조 2801억 원의 수입실적을 보이고 있어 동 기금의 수입은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00~'02년도 고용보험기금 수입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계획	실적 (B)		비율 (B/A)
		예탁금회수	회수금	
'00	22,763	32,801	9,544	144.1
'01	26,095	48,656	19,863	186.5
'02	27,699	75,952	45,143	274.2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02년의 경우 만기도래 등으로 수입조치된 예탁금회수액과 전년도이월금을 제외하는 경우 10.8% 증가, '01년의 경우 9.8%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탁금 회수금 및 전년도이월금등을 포함한 적립금 운용규모가 다른 기금의 운용예와 같이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운용규모와 이자수입 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지출 측면을 보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기금의 3대사업 모두 연례적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고용안정사업은 당초 계획 3380억 원 대비 34.9%인 1179억 원, '01년도에 계획대비 47.9%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는 등 3대사업 모두 연례적인 지출의 과대계상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01~'02년도 고용보험기금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

연 도	계 획(A)	실 적(B)	집행비율 (B/A)	
고용안전 사업	'01	307,206	147,050	47.9
	'02	338,005	117,944	34.9
직업능력 개발사업	'01	582,781	503,132	86.3
	'02	644,420	547,492	85.0
실업급여	'01	903,752	856,272	94.7
	'02	1,125,575	881,555	78.3

이와 같은 수입의 과소 및 지출의 과대계상은 적립금 운용에 있어 과소·과대계상 만큼을 장기가 아닌 단기로 운용하게 함으로써 이자수입의 차질 등 기금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향후 기금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자금수입과 지출수요를 고려하여 단기운용자금의 적정규모('02년 단기자금 운용평잔 : 1조 7210억 원)를 산출하고 1~2년내 지출가능성이 없는 자기에 대해서는 장기운용을 통해 기금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3. 산재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증가 문제

수 증가(전년대비 13.3%) 등에 따라 '01의 1조 7446억 원보다 15.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보험급여 지급실적은 2조 203억 원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 수급자

<'00~'02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명)

구 분	수급자수	보험급여	요양급여	진료비	이종요양비	약제비
'02 (구성비)	162,283	20,203	6,090 (30.1)	4,962 (24.6)	1,022 (5.1)	106 (0.5)
'01 (구성비)	143,216	17,446	5,369 (30.8)	4,463 (25.6)	810 (4.6)	92 (0.5)
'00 (구성비)	114,401	14,563	4,252 (29.2)	3,625 (24.9)	616 (4.2)	11 (0.07)

이와 관련 '02년도 진료비 실적결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위·부정청구액 및 착오청구액이 전년대비 3.5배 증가하고 있고 실사기관대비 적발비

율도 '00년 81.2%, '01년 94.1%, '02년 97.3%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비 실사 및 조치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연도별	실사 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 금액			조치 현황				조치 제외
			계	허위·부정	착오 청구액	계	지정 해제	진료 제한	경고	
'02	184	179	2,285	1,639	646	94	2	35	57	85
'01	187	176	657	368	289	77	0	24	53	99
'00	101	82	171	68	103	31	2	2	27	51

이러한 허위·부정청구액 등에 대한 '02년도 회수금은 10억 1100만 원(회수대상 10억 2500만 원=허위부정청구액×2+착오청구액), 미회수금은 14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무엇보다 실사기관 대비

적발비율이 높으므로 실사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허위·부정청구액 등에 대한 회수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연도별	실사 기관수	적발 기관수	적발 금액			회수대상 금액 ¹⁾	회수금	미회수금
			계	허위·부정	착오 청구액			
'02	184	179	2,285	1,639	646	3,924	2,800	1,124
'01	187	176	657	368	289	1,025	1,012	13
'00	101	82	171	68	103	239	239	-

1) 회수대상금액 = 허위·부정청구액×2 + 착오청구액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 심사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 실사업무는 보건복지부

에서 담당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건복지부 실사결과 건강보험 허위·부정청구

로 적발된 의료기관으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 대해 의무적 실사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실사자료와 실사기법 공유 등 양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朴仁相 위원

(노동부)

■ 고용보험기금

- 기금적립금 과다 및 고용안정 사업 부진과 관련하여

■ 운용실적

<산재보험 대비 건강보험 실사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연도별	의료 기관수	실사 기관수	실사 비율
산재보험	'02	5,832	184	3.2
	'01	5,066	187	3.7
	'00	4,358	101	2.3
건강보험	'02	43,350	683	1.6
	'01	40,882	813	2.0
	'00	38,693	265	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계획 (A)	2002 실적 (B)	증 감 (B-A)	%
수입	계	2,769,880	3,069,653	299,773	10.8
	고 용 보 험 료	2,501,021	2,716,518	215,497	8.6
	가 산 금	3,427	6,175	2,748	80.2
	연 체 료	7,038	20,740	13,702	194.7
	이 자 수 입	201,707	267,147	65,440	32.4
	용 자 금 회 수	31,542	34,099	2,557	8.1
	기 타 잡 수 익 등	7,927	7,756	△171	△2.2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7,218	17,218	-	-
지출	계	2,769,880	3,069,653	299,773	10.8
	고 용 안 정 사 업	338,006	117,944	△220,062	△65.1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644,420	547,493	△96,927	△15.0
	실 업 급 여	1,125,575	881,555	△244,020	△21.7
	고 용 보 험 운 영	54,028	53,278	△750	△1.4
	적 립 금	607,851	1,469,383	861,532	141.7

■ 문제점

○적립금 과다

- 고용보험법 제72조 (기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상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02년도 말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 규모 : 6조 4125억 원
- '02년도 말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총액 : 2조 7699억 원

- 준비율배수를 통해 살펴보아도 적립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준비율배수(RRM)는 <역사상 가장 높았던 지출총액/피보험자임금총액 비율> 대비 <특정 연도의 누적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의 비율

- ①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수치일치보험요율이 가장 높았으므로 준비율배수의 분모는 1998년의 수치일치보험요율과 동일
- ② 우리나라의 준비율배수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1.5, 실업급여사업의 경우 2.1배가 적절함(허재준 외 2000년)

준비율배수(1995~2002)²⁾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고용안정사업	0.98	1.41	2.21	2.87	3.57	4.15	4.66	5.67

2)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시행 8주년 기념토론회 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	0.44	0.63	0.90	0.86	0.81	0.70	0.74	0.81
실업급여사업	0.58	0.85	1.30	1.20	1.35	1.73	1.91	2.30
고용안정+직업능력	0.59	0.84	1.26	1.42	1.57	1.66	1.82	2.28
전 체	0.62	0.90	1.34	1.34	1.44	1.73	1.92	2.15

주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피보험자임금총액은 고용안정사업 보험료 수입을 보험요율(1995~98년 0.2%, 1999~2002년 0.3%)로, 실업급여사업 피보험자임금 총액은 실업급여사업 보험료 수입을 보험요율(1995~98년 0.6%, 1999~2002년 1.0%)로 나눈 값으로서 준비율 계산에 피보험자임금총액은 엄밀히 말하면 징수율×피보험자임금총액임. 3사업 전체의 피보험자임금총액은 고용안정사업의 것을 이용함.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관리 필요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세 계정으로 구분 운용(요율 및 부과방식도 각각 다름). 실업급여는 일종의 손해보험이므로 위험률에 근거하여 별도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나 고용안정 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별도로 관리해야 할 근거가 부족

-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안정계정의 통합이 필요
- 고용안정사업은 누적적립금 수준이 높은 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자를 보여 '07년에는 적립금이 부족할 전망이다(상기 준비율배수 및 다음 표 참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재정수지전망

(단위 : 억원)

	전년도 이월금	총수입	보험료 수입	총지출	수지차	연말누적 적립금
2001	4,629	5,545	5,054	5,275	270	4,899
2002	4,899	5,891	5,390	5,819	72	4,970
2003	4,970	6,120	5,628	6,687	△567	4,403
2004	4,403	6,464	5,989	7,384	△920	3,483
2005	3,483	7,834	6,399	7,990	△1,157	2,327
2006	2,327	7,220	6,840	8,655	△1,435	892
2007	892	7,617	7,307	9,385	△1,768	△876
2008	△876	8,032	7,810	10,187	△2,156	△3,031
2009	△3,031	8,459	8,344	11,072	△2,612	△5,644
2010	△5,644	8,906	8,922	12,048	△3,142	△8,785

- 두 사업이 구분·관리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적립금을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용안정사업을 수행할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
- 한편 고용안정사업의 과도한 적립금은 계속

적인 사업실적부진이 큰 이유임. '02년 집행실적은 수입대비 215%에 불과하고 계획 대비 349%에 그침. 대책마련 및 사업조정 필요

계획대비 집행실적

(천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단 위	금 액	단 위	금 액	
고용유지지원금	343,729명	73,398,764	152,384명	32,729,081	44.6
전직지원장려금	59,073명	51,688,875	7,408명	431,640	0.8

재고용장려금	658명	1,240,000	207명	506,000	40.8
채용장려금	3,488명	1,372,648	3,488명	1,374,648	100.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61,552명	44,556,800	270,902명	39,980,164	89.7
여성고용촉진장려금	358,574명	71,991,656	3,433명	4,099,336	5.7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83,681명	50,209,179	13,558명	7,154,334	14.2
보육교사임금지원	4,042명	2,483,367	1,511명	2,483,367	10.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지원	44개소	2,000,000	-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	40,000명	2,400,000	21,621명	1,295,092	54.0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10개소	2,000,000	2개소	450,000	22.5

■ 질의

- 고용보험기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적립금문제입니다. 작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적립금은 6078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적은 6조 원 정도로 목표대비 983.6%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만기도래 등으로 세입조치되었다가 재예탁된 적립금 4조 5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 어찌됐건 지난 한 해에만 1조 5000억 원의 적립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총 적립금 규모는 6조 4000억 원에 달합니다. 기금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적립금 규모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 기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72조는 당해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지출총액이 2조 8000억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적립금은 3조나 4조 원 내에서 유지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적립금과 관련된 측정지표로서 '준비율배수'를 살펴보더라도 기금 전체적으로 2.1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역시 조금 과다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IMF외환위기와 대량실업사태를 겪은 우리로서는 보다 충분하고도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적립금을 늘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등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
- 아울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종의 손해보험이므로 별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지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특히 고용안정사업은 지속적인 사업부진이 겹치면서 누적적립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자가 계속되어 2007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두 계정 간에 전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적립금이 남아도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게 될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두 사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지원문제

■ 질의

- 산재보상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재활훈련지원사업입니다.

■ 산재근로자 재활훈련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계획(A)	2002 실적(B)	비율(B/A, %)
계	34,550	24,238	70.2
재활훈련원 운영(안산, 광주)	2,947	2,744	93.1
직업훈련비용지원	3,220	4,989	154.9
직업재활상담(잡급)	1,980	1,588	80.2

자립점포임대지원	14,239	7,434	52.2
후유증상진료제도 운영	2,358	4,213	178.7
의료재활지원사업	180	86	47.8
재활스포츠지원사업	180	473	262.8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및 수리	621	285	45.9
요통학교 운영	30	2	6.7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300	147	49.0
재활전산프로그램 신규개발	304	304	100.0
직장복귀지원금	5,600	-	-
직업재활센터 건립	303	303	100.0
케어센터 건립	655	655	100.0
기타사업운영비	1,633	1,015	62.2

■ 지적사항

- 장애인공단의 유사사업과 통합·연계 방안 검토
 - 동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시행 중인 장애인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과 거의 유사함. 장애의 원인이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의 차이만 있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훈련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훈련성과 등을 면밀히 비교·평가하여 훈련사업의 통합 또는 연계방안을 검토해야 함.
- 사업실적 제고 방안 마련
 -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52.2%), 의료재활지원사업(47.8%), 요통학교운영(6.7%) 사회적응프로그램위탁운영(49.0%) 등 사업의 실적이 극히 부진하므로 사업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난 해 실적을 살펴보면 계획대비 집행률이 70%로 비교적 부진합니다. 특히 자립점포임대지원사

업 52.2%, 의료 재활지원사업 47.8%, 요통학교운영 6.7% 등 일부 사업은 활성화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산재근로자 재활훈련사업은 여러 면에서 장애인공단에서 시행중인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의 원인이 산재인지 아닌지 여부의 차이만 있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두 공단의 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훈련사업의 통합 또는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

- 기금운용예측의 정확성 제고
-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기금운영 예측의 정확성 부족

■ 임금채권보장기금 조달 및 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조 달				운 용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A)	실적(B)	%(B/A)
합 계	473,405	498,589	105.3	합 계	473,405	498,589	105.3
부 담 금	85,235	83,967	98.5	채당금지급	72,963	62,947	86.3
가 산 금	636	1,058	166.4	채특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58,555	157,267	92.0
사업주변제금	34,547	52,687	152.5	근로복지공단출연	5,478	4,101	74.9
이자수입	13,783	17,663	131.8	반환금	950	584	61.5
일반회계전입금	268	268	100.0	제도운영	294	286	97.3

전년도이월금	148,936	152,946	102.7	기금관리비	33	29	76.3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190,000	190,000	100.0	여유자금	235,127	270,937	115.2
				한국은행잔액	-	2,438	순증

- 사업주 변제금(152.5%), 가산금(166.4%), 이자 수입(131.8%) 등이 계획보다 초과 조달되었음. 그러나 이자 수입은 금리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고, 최근 연도의 누계치를 감안하여 산출하게 되는 변제금이나 가산금의 경우에는 동 제도가 시행 초기이며, 사업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과소추계되는 것이 당연함.
- 기금 조달계획은 가급적 정확성을 기하여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바 시정이 요구됨.

○5인 미만 사업체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해당금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전체	금액	212,962	16,121	38,814	45,847	70,420	62,947
	인원수	64,716	4,639	12,588	14,254	21,554	17,870
5인 미만	금액	140	-	-	4	85	179
	인원수	48	-	-	2	32	52

- '01년 7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급요건의 엄격하여 실적이 극히 부진한 상태임.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식의 개선을 통해 수혜실적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질의

-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금조달계획수립과정에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달 계획은 가능한한 정확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자료를 보면, 조달항목 중 사업주변제금, 가산금, 이자수입 등의 항목에서 당초 계획보다 130% 이상 조달되었습니다.
- 조달계획을 짤 때 사업주변제금과 가산금은 지난 3년간의 조달실적을 고려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는 과소계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또한 이자수입의 경우에는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정확한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금 조달계획은 가급적 정확성을 기하여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노동부는 과소계상 일변도의 계획수립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 계획 수립시 사업확대분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금액을 추 계해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또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동 제도가 적용 확대된 것이 2001년 7월입니다. 제도 확대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5인미만 사업장의 지원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02년 실적을 보면 전체 지원 근로자 1만 7870명 가운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불과 52명이었습니다. 장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식적으로 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이나 임금체불문제가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원실적이 미미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은 물론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나 영세기업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유사사업 축소 및 통합 문제

■ 지적사항

○유사사업 통합방안 검토

-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 예산 및 다른 기금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업들을 축소하고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체 계를 구조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으로 동일 보육시설설치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기금 간 사업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여 기금 사업 중 고용보험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사업은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금채권 보장사

업과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성격의 사업임.

- 그 지원대상이나 형태에 있어서 두 사업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으나 그 차별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두 사업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실업대책 계정의 고용보험기금 통합 검토

- 실업대책 계정의 경우 대량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정된 계정이므로 경

제 회복에 따라 실업률이 안정된 사정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고용보험기금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따라 '02.12.31부터 실업자 가계안정자금대부사업을 종료하였으나 실업대책 사업계정 규모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음.
- 동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직여성가장자영업 창업지원이나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등의 사업은 고용보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실업대책 사업계정 추이

(단위 : 백만원, %)

항	'00년		'01년		'0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업대책사업	355,734	161,340 (45.4)	230,079	191,243 (83.1)	716,337	673,966 (94.1)
관광실업대책사업	7,215	4,133 (57.3)	4,518	3,827 (84.7)	7,108	5,680 (79.9)
차기이월자금	522,311	788,554 (141.4)	1,288,465	1,576,448 (122.4)	1,247,416	1,417,245 (113.6)
계	885,260	904,027 (102.1)	1,523,063	1,771,518 (116.3)	1,970,863	2,096,891 (106.4)

■ 질의

-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동 기금은 “저소득근로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 근로자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및 근로 의욕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이러한 기금의 목적상, 다른 기금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설치운영사업은 고용보험에도 거의 동일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 또한 임금체불생계비 용자사업과 임금채권기금의 임금채권보장사업 역시 체불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사업이 기금별로 나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 아울러 실업대책계정의 고용보험기금 통합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대책 계정은 IMF 직후 촉발된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정된 계정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고용보험사업으로 수행 가능한 것들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여건이나 실업률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동계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답변 바랍니다.

○全在姬 위원 (노동부)

직업상담원 인건비 전용 문제

■ 현황

- 2002년 예산 중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의 인건비는 71억 2천8백만 원으로 이 중 64억 800만 원이 지출되고 지방노동관서 인건비성 경비로 5300만 원이 이용되었으며, 2억 4400만 원은 불용, 나머지 4억 2300만 원은 일반직원의 인건비 부족액 충당 재원으로 전용
-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임. 2000년부터 인건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00년에는 3억 7700만 원이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되었고, 12억 2000만 원은 인건비적 경비 부족분으로 이용, 2001년에는 4억 3000만 원 전용, 2억

9400만 원 이용

○직업상담원의 총원 미달로 인한 불용예산 재원을 인건비로 충당한 것임.

■ 질의

▶ 직업상담원의 예산상 정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 직업상담원의 인건비 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직업상담원의 인건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0년 3억 7000만 원의 전용을 통한 공무원 인건비 총당, 2001년 4억 3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로의 전용, 2002년도의 경우에도 4억 2000만 원이 인건비성 경비로 전용되었음

○ 이러한 예산 집행은 직업상담원의 정원을 채우지 않고, 그 잔액을 공무원의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 우선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가 직업상담원의 예산상 정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것임. 예산 편성시 직업상담원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예산상표 정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00년도 48명 부족, 2001년 152명 부족, 2002년 136명이 예산상의 정원이 비해 부족함.

▷ 참고 : 직업상담원의 예산상 정원 대비 연도말 현원

(단위 : 명)

년도	예산상 정원	현원(연도말)	비 고
2000	2,067	1,919	- 48
2001	2,201	1,949	-152
2002	2,057	1,821	-136

○ 문제는 직업상담원의 경우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면 그 충원은 노동부장관이 직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임.

※ 참고 : 노동부 직업상담원 규정 제556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음.

○ 그런데 분명히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이들을 충원하지 않았음.

○ 그러나 문제는 과연 직업상담원을 최소한 정원에 맞도록 충원할 필요가 없었는가 하는 점임. 먼저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량 보면, 1998년 담당 업무는 25개였는데 2002년에는 43개로 늘어났고 2003년 현재는 45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안정센터당 평균 담당 인원은 99년 21.8명에서 2000년 19.3명, 2001년

14.8명, 2002년에는 14.2명에 불과한 실정임.

○ 더군다나 직업상담원의 예산은 일용잡급으로 편성되어 예산만 축소되면 언제든지 정원 조정이 가능함.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고용안정센터당 인원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분명히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공무원 인건비로의 전용 문제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직업상담원 예산을 전용하여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임. 공무원의 인건비성 경비는 경직성 경비로 사실상 당초 예산 편성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업상담원 결원 운용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은 예산의 왜곡 집행이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그것이 2002년 한해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부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003년 현재에도 직업상담원의 예산상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실정

○ 문제는 2003년 현재에도 직업상담원의 예산상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임. 2003년 7월 현재 예산상 정원은 1850명인데 비해 1797명을 운용함으로써 53명의 결원으로 운용하고 있음.

○ 2002년 고용안정센터의 업무량이 43개였다면, 2003년은 45개로 확대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업무 등임.

○ 더구나 직업상담원이 상시 유효구인업체 취업지원창구, 인턴전담창구, 부정수급전담창구, 여성취업전담창구 장기구직자 취업지원창구 등 노동부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전담창구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원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형편임.

▶ 한국노동교육원 강의동 신축 문제

○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동교육원 강의동 신축사업임. 이 사업예산으로 2002년도에 총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이 예산은 불용되었음.

○ 불용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교육원의 신축 또는 증축 근거 조항이 2001년 1월 5일 삭제되었기 때문임. 즉 자연보전권역안에서 한국노동교육원의 신축, 증축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노동교육원의 건물 증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임.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2001년 1월 5일 삭제된 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 4의 <나>

- 한국노동교육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및 중기협, 경총 등이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
- 삭제 사유 : 자연보존권내에서 보호완화 대상이었는데 이를 다시 강화한 것임.

○ 문제는 2001년 1월 5일 이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예산 편성시에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더군다나 2003년 예산 편성시에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03년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는지, 사업추진시 관계법령상 제약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교육원 담당자나 총괄하는 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특히 2003년 현재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자활구직세일즈사업

○ 자활직업훈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활구직세일즈사업임. 2001년 노동부에서는 애초 자활인터체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는 청소년 정부 지원인턴제와 유사한 것으로 자활대상자를 사업체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었음 그러나 사업이 부진하자 사업을 종료하고 다시 자활구직세일즈사업으로 변경하여 2002년도에 시행하

였음.

○ 그러나 이 사업도 지난 2002년 예산 심사에서 자활대상자들에게 스스로 구인처를 찾고 또 스스로 취업기회를 찾게 한다는 것은 자활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상 인원도 8000명은 너무 과대 추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노동부를 믿고 이러한 예산 편성을 수용하였던 것임.

○ 그런데 2002년 8000명 계획에 1457명으로 18.5%. 예산 112억 원 중에서 23억 원을 집행하여 20.5%의 실적으로 대단히 부진하다고 할 수 있음.

○ 자활구직세일즈사업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취업처를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구직세일즈사업과 유사한 사업임. 그러나 구직세일즈사업이 그나마 2000년 취업률이 61.3%, 2001년 64.8%, 2002년 75.7%에 이르는데 반해 자활구직세일즈 과연 자활대상자들의 특수성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구직세일즈사업이란 취업의욕은 높으나 취업이 어려운 청소년, 장기실업자 등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이에 반해 자활구직세일즈 사업은 내용은 동일하되 자활대상자만으로 하는 사업임.

○ 결국 노동부가 의욕만으로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세움으로써 지속적인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관은 이러한 지적을 분명히 인지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람.

○徐秉洙 위원
(노동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 이·불용액 발생에 있어서
 - 2002년 노동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6273억 7200만 원 중 90% 규모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 예산현액의 5.5%가 이월되었으며, 4.5%인 281억 5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비율		불용액(D)	D/A(%)	
			B/A(%)	이월액(C)			C/A(%)
1998년도	579,037	527,017	91.0	12,134	2.1	39,886	6.9
1999년도	790,709	696,358	88.0	50,314	6.4	44,037	5.6
2000년도	658,928	621,150	94.3	15,460	2.3	22,018	3.4
2001년도	685,990	608,385	88.7	43,392	6.3	34,132	5.0
2002년도	627,372	564,960	90.0	34,256	5.5	28,156	4.5

○ 2002년도 국가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지출액이 98.5% 수준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은 각각 1.1%와 0.4% 정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

구분		지출율	이월율	불용율
2001년도	국가 전체	98.4	0.9	0.7
	노동부	88.7	6.3	5.0
2002년도	국가 전체	98.5	1.1	0.4
	노동부	90.0	5.5	4.5

○ 결국 노동부가 사업 계획의 소요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것 아 나타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감사원의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획예산처, 농림부, 교육부에 이어 불용액이 많은 부처로 지적 되었습니다.

○ 특히 예산의 불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불용액은 해마다 동일한 사업에서 동일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 사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1년도		2002년도	
	불용액	불용율(%)	불용액	불용율(%)
여성가정실업자취업훈련	492	8.8	266	6.8
창업 및 취업훈련지원	7,668	18.7	5,287	10.2
청소년 인턴지원	15,423	15.5	4,305	5.3
자활직업훈련	936	7.9	3,320	14.3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378	6.5	914	16.2

○ 심지어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에서조차 사업비가 본래의 이월 목적

대로 지출되지 못한 채 불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이월액(A)	집행액	불용액(B)	불용률(A/B)
청사 관리	1,072	1,072	-	-
정책연구개발	44	44	-	-
건물임대차 계약	972	972	-	-
노사관계선진화방안 연구	34	34	-	-
전산관리	113	113	-	-
생계비조사분석용역	28	28	-	-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222	204	18	8.1
창업 및 취업훈련	16,112	13,204	2,906	18.0
청소년 인턴지원	21,169	20,690	479	2.3
자활직업훈련 등	3,626	3,296	330	9.1
계	43,392	39,657	3,733	8.6

- 특히 전년도 이월액의 불용률은 2002년도 예산 불용액 비율 4.5%의 두 배 가량인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로서는 이같은 예산집행 행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은 무엇인지, 노동부가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있어서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에 대해서도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 있지만 예산편성과 집행방법, 사업실시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 정확한 사업량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용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	편성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이월액	이월률		
2000년	83,500	30,488	-	113,988	110,459	3,389	3.0	140	0.1	
2001년	71,000	3,389	25,000	99,389	62,796	21,169	21.3	15,424	15.5	
2002년	60,000	21,169	-	81,169	61,089	15,775	19.4	4,305	5.3	
계	214,500	55,046	25,000	294,546	234,344	40,333	13.7	19,869	6.7	

- 인턴취업지원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33.7%의 순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등 상당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002년도 수료자 7424명의 89.4% 수준인 663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였으며, 그 중 68.5%인 4543명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렇게 본다면 청년실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수지원제도 괜찮은 사업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연수생 158명 중 90% 가량의 연수생 141명이 대체로 만족해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추진실적>

(단위 : 명)

연도	인턴취업지원제					연수지원제				
	선발 (목표)	연수중	중도 탈락	수료	정규직 채용	선발	연수중	중도 탈락	수료	정규직 채용
2000년	56,593 (56,600)	-	12,955 (22.9)	43,638	36,405 (83.4)	-	-	-	-	-
2001년	36,671 (38,600)	-	9,184 (25.0)	27,487	24,464 (89.0)	-	-	-	-	-
2002년	10,838 (9,000)	892	2,522 (23.3)	7,424	6,636 (89.4)	40,383 (35,000)	10,500	12,105 (30.0)	17,778	968 (5.4)
계	104,102 (104,200)	892	24,661 (23.7)	78,549	67,505 (85.9)	40,383 (35,000)	10,500	12,105 (30.0)	17,778	968 (5.4)

- 그러나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면 이 사업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 먼저 인턴취업지원제의 한계입니다.
-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인턴취업지원제를 통해 발생한 총 고용효과와 41.0%가 사중 손실 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또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의 40% 가량은 근무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노동부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유지성을 고려한 순고용 효과는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경감 수단으로만 이용된다는 평가도 가능한 것입니다.
- 연수지원제의 경우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 연수지원제도에 참가한 기업 중에는 인력난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연수지원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의 예산이 기업의 비정규직 단기계약 근로자 급여로 활용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수제가 도움이 되는 이유-참여기관 조사>

참가 이유	백분률(%)	
인력난 해소	31	63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 조달	23	
인건비 절감	9	25
기업 이미지 제고	21	
연수제라는 선진관행 정착	4	
우수인력 사전 확보	12	12
계	100	

자료 :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 설문조사 결과』(2002년)

- 또한 연수지원제가 도입 목적에 걸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수지원제도의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체에는 직무 교육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참가자 4만 383명 중 민간 기업체 참가자는 17.2%인 6935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국가기관, 자치단체 또는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업무 보조 역할이라고 하지만 상당 부분은 복사 등의 그야말로 잡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 청년 실업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민간 기업의 실정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취업지원과 동시에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동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 저소득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자활지원사업예산 집행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부문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인원	훈련인원	수료인원	취업인원	취업률
자활직업훈련	23,217	16,297 (70.2)	3,600 (15.5)	3,320 (14.3)	5,000	7,651	3,703	490	6.4
자활구직세일즈	11,220	2,340 (20.9)	-	8,880 (79.1)	8,000	1,457	-	387	26.6

- 자활직업훈련 예산의 29.8% 심지어 자활구직세일즈 사업비는 79.1% 규모의 예산액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업은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활지원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첫째,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는 사업 대상자 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또한 사업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대상과 중복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둘째, 자활사업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기본적 여건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 자활사업 지원 대상자의 45%가 여성입니다. 또한 15%는 편부모 가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아·보육·간병서비스 등의 여건을 함께 확보하여 훈련생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셋째, 노동부의 work-net과 보건복지부의 welfare-net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지원 대상자의 신상을 비롯해서 취업지원 계획 자활경로 지정 등에 대한 정보와 업무절차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전산망 간에 상호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국민밀착형 노동행정 서비스에 있어서
- 직업상담원과 근로감독관은 국민 밀착형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손과 발입니다.
- 그런데도 직업상담원의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의 10% 가량이 지방노동관서 인건비성 경비로 이용되거나 또는 일반직원의 인건비 부족액 충당 재원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인건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전용액	전용률	이용액	이용률	불용액	불용률
2002년	7,179	6,408	89.9	424	5.9	53	0.8	244	3.4

- 근로감독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감독관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하는 근로감독 업무지도비 중 14%에 달하는 예산이 지방관서 인건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업무지도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전용액	전용률	이용액	이용률
2001년	2,436	2,048	81.1	46	1.9	342	14.0
2002년	2,436	2,074	85.1	336	13.8	26	1.1

- 직업상담원 인건비와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업무 지도비에서 이렇게 전용과 이용, 그리고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산상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이 운용된다는 것은 행정대상에게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실업률이 증가하고 노사 갈등으로 인한 근로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면서 국가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노동부의 중대한 직무 유기입니다.
- 예산상의 정원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될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은 누가 담당할 것입니까?
고용허가제에 의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누구에게 관리를 맡길 것입니까?
-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서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 조건은 누구에게 감독을 요청할 것입니까?
- 노동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고용보험기금에 대하여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대기업 중심 지원에 대하여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서 실업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마땅합니다.
 -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부담만 늘어 놓고 지원비율은 오히려 축소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제도
 - 187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135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이 제도는 사업비 집행이나 훈련지원 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 하지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를 규모별로 분석하면 이 사업이 결코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지원 내역>

구분		150인 미만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수(개)	756,531	4,774	432
	지원 사업장 수((개)	48,717	9,892	3,426
	대상 사업장 대비 지원 사업장 비율(%)	6.4	207.2	793.1
인원	대상 인원(명)	4,584,365	1,413,746	1,079,793
	훈련 인원(명)	290,547	301,015	1,090,250
	대상 인원 대비 훈련 인원 비율(%)	6.3	21.3	101.0
지원금	고용보험 징수액(백만 원)	1,190,158	631,725	653,916
	지원금(백만 원)	26,226	37,712	106,168
	징수액 대비 지원금 비율(%)	2.2	6.0	16.2

-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활용했던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중사자 규모가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02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8번씩이나 활용한 반면 150인 미만 사업장은 100개 업체 중 불과 6개 업체의 비율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개개 근로자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

- 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1회 이상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혜택을 받았지만 1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100명 중 불과 6명만이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 지원금 또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고용보험의 16%를 직업개발훈련비용으로 되돌려 받고 있는 셈이지만 1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 2% 정도만을 지원받을 뿐입니다.

- 유급휴가훈련제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규모사업장 편중은 유급휴가훈련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유급휴가훈련 지원 내역>

구분		150인 미만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 수(개)	756,531	4,774	432
	지원 사업장 수((개)	27	54	142
	대상 사업장 대비 지원 사업장 비율(%)	0.004	1.13	32.87
인원	대상 인원(명)	4,584,365	1,413,746	1,079,793
	훈련 인원(명)	505	421	5,037
	대상 인원 대비 훈련 인원 비율(%)	0.011	0.03	0.47
지원금	고용보험 징수액(백만 원)	1,190,158	631,725	653,916
	지원금(백만 원)	1,538	2,087	7,450
	징수액 대비 지원금 비율(%)	0.13	0.33	1.14

○ 2002년에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했던 사업장을 살펴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개 업체당 30개 이상 사업장이 활용한 반면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0만개 업체당 불과 4개 비율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1000명 중 5명이,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1만 명당 1명만이 혜택을 받게 된 셈입니다.

○ 전체 고용보험 징수액과 유급휴가훈련 활용액을 비교하면 10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고용보험의 1.14%를 유급휴가훈련비로 활용하고 있지만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불과 0.13%만을 되돌려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 이렇게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과 유급휴가훈련제도는 기업 규모별로 대단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종사자 10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자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여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지원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사중손실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 하지만 정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은 자신이 납부한 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14일 이상(2002년도는 30일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유급휴가 훈련 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률적으로 월 최저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 금액도 사업체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리라고 판단됩니다.

○ 특히 이들 제도가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근로자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 사업주도 하여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바람직한 대책일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 대하여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용자사업에 있어서
-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용자사업의 경우 2001

년도 이후 집행실적이 저조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용자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개소)

년 도		재원(A)	집행액(B)	B/A(%)	불용액(C)	C/A(%)
1999년	예산	96,000	94,383	98.3	1,617	1.7
2000년	예산	116,511	114,172	98.5	1,799	1.5
2001년	예산	132,057	98,863	74.9	33,194	25.1
2002년	예산	124,265	64,980	52.3	59,285	47.7

- 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해지는 원인은 5% 수준의 금리가 정책자금으로서의 이점을 상실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 용자금리 5%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14%대를 유지하던 1998년 책정된 채 변동 없이 2002년도까지 집행되었습니다.
- 정책 금리에 유인 효과가 없다면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해지는 것이 당연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동부는 2003년도부터 용자금리를 4%로 인하하였습니다.
- 2001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 그러나 금리를 5%에서 4%로 인하한 2003년도 사업집행 실적 또한 결코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용자금리 인하 이후의 용자사업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재원(A)	지급금액(B)	B/A(%)	사업장수
2002년도	124,265	64,973	52.3	1,031
2003년도(7월 31일 현재)	134,028	34,612	25.8	570

- 2003년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급 금액에서나 지원 사업장수에서나 모두 2002년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산업재해시설자금용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해지는 이유를 이른바 CLEAN사업장조성지원사업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산업재해시설자금용자사업과 CLEAN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이 상호 중복되

니다.

- 물론 지원한도액과 지원 대상에서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CLEAN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산업재해시설자금용자사업의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 사업이 차별성 있게 운영된다고는 결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시설자금용자사업의 규모별 지급실적>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A)	50인 미만 사업장(B)	B/A(%)	300인 미만 사업장	300인 이상 사업장
2001년	용자금	98,863	88,148	89.16	9,932	783
	사업장수	1,540	1,438	93.38	94	8

2002년	용자금	64,979	59,357	91.35	5,622	0
	사업장수	1,031	982	95.25	49	0
2003년(7월 31일 현재)	용자금	34,612	31,775	91.80	2,837	0
	사업장수	570	535	93.86	35	0
계	용자금	198,454	179,280	90.34	18,391	783
	사업장수	3,141	2,955	94.08	178	8

- 산업재해시설자금용자사업에 비해서 CLEAN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무상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서로 동일한 취지를 갖는 사업이 각각 유상용자와 무상보조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든가 아니면 사업별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정책 구상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대하여

- **체당금 운용 실적에 대하여**
- 2002년도 체당금 지급실적은 2001년도 체당금 지급액과 비교할 때 대략 1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체당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비율(%)
2001년	76,342	70,421	92.2
2002년	72,963	62,947	86.3

- 체당금 지급실적이 감소한 데에는 2002년도의 경기 회복세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또한 지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하는 요건이 대단히 엄격하였다는 점에서 수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 뒤늦게나마 정부가 올 6월에 임금채권보장법

-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도산 등의 사실을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실적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체당금 지급 실적>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금 액		인원수	
	전체	5인 미만 사업장	전 체	5인 미만 사업장
2001년	70,420	85(0.12%)	21,554	32(0.15%)
2002년	62,947	179(0.28%)	17,870	52(0.29%)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실적은 전체 집행 사업비의 불과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 이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수혜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 노동부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대하여

-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용자사업에 있어서**
-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용자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고용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존재하는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 그러나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용자사업의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 게다가 2000년 이후에는 해마다 그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용자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목 표		용 자			
	개소(A)	금액(a)	개소(B)	B/A(%)	금액(b)	b/a(%)

'96~'99년	426	13,540	121	28.4	4,527	33.4
2000년	23	1,000	14	60.9	610	61.0
2001년	23	1,000	8	34.8	302	30.2
2002년	12	1,000	3	25.0	290	29.0

-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6% 대에 달하는 용자 이자율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결산에서도 용자금을 인하하여 이 사업의 집행실적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용자사업이 부진한 또 다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적격자로 선정되더라도 정작 은행에서 담보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를 집행하지

-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작년도 결산심사에서 노동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과 협력한 다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02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한 14개 사업체 중 3개 사업장만이 은행으로부터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용자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년 도	선 정		용 자			
	개소(A)	금액(a)	개소(B)	B/A(%)	금액(b)	b/a(%)
'96~'99년	262	10,704	121	46.1	4,527	42.3
2000년	28	1,204	14	50.0	610	50.7
2001년	18	1,168	8	44.4	302	25.9
2002년	14	842	3	21.4	290	34.4

- 불과 3개 사업장에만 용자지원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노동부가 이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 결국 중소기업 복지정책의 실패는 노동부가 자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은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 여성 가장이나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영업 창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습니다.
- 그러나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불과 47.6%,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은 77.2%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

<자영업 창업지원사업 목표 대비 지원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건수(A)	금액(a)	건수(B)	B/A(%)	금액(b)	b/a(%)
장기실업자	2001년	600	30,000	543	90.5	20,600	68.7
	2002년	430	30,000	512	119.0	23,151	77.0
실직여성가장	2001년	522	26,100	407	78.0	16,800	64.4
	2002년	350	25,000	246	70.2	11,900	47.6

- 특히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은 2001년도와 비교할 때 건수는 물론 지원 금액에서도 대단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창업지원금리가 75% 수준으로 여타의 정책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 점포 운영자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창업지원 사업은 본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별도의 근로자 6224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따라서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이중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 마찬가지로 창업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창업의 성공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자영업 창업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분야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지적하겠지만 노동부로서도 창업지원사업의 다변화·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사업에는 신규 청년실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술 집약적 부문으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동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답변서)

○노동부장관 權奇洪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

(朴仁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지난해('02년)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1조 5000억 원이 발생했고, 총 적립금 규모가 6조 4000억 원에 달해 기금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적립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음.

(답변)

- 적립금 규모를 적정한 선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임
- 적정적립금 규모와 관련하여 지난 외환위기시 경

- 힘에 비추어 경제위기시 실업률이 3% 수준으로 감소하는 데는 2.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함
 - 이러한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하므로 적립금으로 추가지출에 충당해야 하여, '03년 지출수준으로 볼 때 9조 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함
- 현재 추세로 볼 때 '05년 말에는 적립금 규모가 9조원 수준이 될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지출규모에 따라 수입을 연계하는 변동요율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질의)

2.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등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음

(답변)

- 취약계층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함
- 우리부에서는 고용보험의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전망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 '04년부터 일용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3.4억 원→2000만 원 이상), 단시간 근로자(1주 18시간 → 15시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새로이 적용할 계획이며
 -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내년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에 따른 재정상황을 본 후 2005년 이후 법개정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

(질의)

3.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음.

(답변)

- 위원님 지적대로 고용보험 3사업 중 고용안정사업은 누적 적립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직업능력개발사업 적립금은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두 사업의 계정 통합 필요성도 제기하는 견해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03. 1. 1부터 보험요율을 0.3%에서 0.15%로 인하하였고, 금년 말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추가하면 적립금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두 계정의 통합문제는 향후 고용안정사업의 전반적인 운용방향과 재정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4.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재활훈련사업과 장애인공단의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사업이 유사하므로 두 공단의 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훈련사업의 통합 또는 연계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심

(답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가지 사업은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복지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반면 산재장애인은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인인데 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훈련대상에는 정신적 장애인도 있어 장애의 유형이 다르므로 훈련도 따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현재 양 공단의 재활훈련사업의 효과성 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의뢰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직업훈련의 연계 또는 업무영역 조정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03.3.~'03.10) 실시중

<양 공단의 훈련기관 수 및 훈련정원>

- 근로복지공단 : 2개소 250명(1개소 건립중)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6개소 780명(1개소 건립중)

(질의)
5. 임금채권보장기금 관련 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조달실적만을 고려한 조달계획 수립은 과소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정확한 추계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02년도 기금결산 결과, 전체 조달 실적은 계획 대비 105.3% 이나,

- 가산금(166.4%), 사업주 변제금(152.5%) 등이 계획 대비 50% 이상 초과 조달되었음

○현재 조달계획 수립시에는

- 가산금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 및 수납률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 변제금은 최근 5년간 해당금 지급실적 및 연도별 변제금 회수율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실적에 근거한 조달계획 수립은

- 아직 제도 시행이 오래지 않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임

○향후 조달 및 운용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정확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근 실적은 물론,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음

(질의)
6. '02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해당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가. 수혜율이 저조한 이유

○'00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수혜범위를 크게 넓혔으나 그간 수혜실적이 미미

- ※ 5인미만 사업장 해당금 지급실적 : '00년 2명(400만 원) → '01년 32명(8500만 원) → '02년 52명(1억 7900만 원)

○그동안 수혜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영세 사업장에서의 낮은 인지도 및 수혜요건의 엄격성 등에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됨

나. 수혜율 제고 대책

○'03년 6월 영세사업장의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급요건 중 사업계속기간을 단축(1년 → 6월)하였음

-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수혜율이 증가하는 추세

- ※ '03년 8월 말 현재 수혜실적(76명, 3억 200만 원)은 이미 '02년도 실적(52명, 1억 7900만 원)을 68.7% 초과

○아울러 향후 5인 미만 사업장의 수혜율 제고를 위해 영세 사업장에 대한 홍보 노력(리플렛 제작·배포, 신문 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음

(질의)
7. 보육시설운영사업과 체불근로자생계비 대부

사업을 예로 드시면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기금별로 나열되는 것에 대하여 중복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 위원님의 지적대로 기금별로 비슷한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보육시설운영사업은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 다만 임금채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과 임금채권보장사업의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채불근로자의 보호라는 점에서 사업성격은 비슷한 점이 있으나
 - 생계비대부는 재직근로자가 사업대상인 반면 임금채권 보장 사업은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사업대상이며
 - 현재 양 사업의 보호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을 더 중시하여 조성재원과 운영주체를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장단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질의)

8.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실업대책계정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음

(답변)

- 실업대책계정 사업은 '98년 IMF 당시 늘어난 실직자의 생활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노동부 소관 기금 중 성격이 유사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편입되었음
- 실업대책사업은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고용보험 기금의 사업과 비슷하나
 -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자 등 고용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장기실직자 등을 주된 사업대상으로 하며, 채권발행·차관자금 등을 조성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사업과 다른 점이 있음
- 실업대책계정의 주된 사업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은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05년까지 수행하되,
 - '06년 이후에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또는 고용

보험기금으로의 편입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朴赫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인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사업비를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비 일부를 부족예산에 전용한 것은 여성가장실업률이 낮아지고 '01년부터 확대된 자활훈련에 상당수가 흡수되어 훈련대상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임
 - ※ 여성가장실업률 : '98년(5.0%)→ '99년(4.3%)→ '00년(2.6%)→ '01년(2.6%)
 - ※ 여성가장훈련생('02년 약 2,500명) 중 자활훈련대상자는 약 26%
-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비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2. 직업상담원 불용예산을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음

(답변)

-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용하게 된 것은
 - 직업상담원 결원운용으로 이·전용 시점(11월 18일, 11월28일)에서는 불용이 명백한 상태였고 공무원 인건비와 직업상담원 인건비는 노동부 직원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법정기준에 의해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 공무원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각 부처에서 임의적으로 지급액을 증감시킬 수 없으며, 직업상담원 인건비에서 이·전용하지 않았다면 여타 사업비에서 이·전용하여 충당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부족과 직업상담원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3. 근로감독관의 정원미달로 전용과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정원운용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적정한 인력운용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음

(답변)

- 근로감독관 정보활동비(1인당 월 20만 원)를 지급하기 위해 24억 3600만 원(1015명)의 예산을 편성
 - 그러나 근로감독관 정원미달(152명)로 불용이 예상되어 3억 3600만 원을 자체 전용, 지방노동관서 인건비적 경비로 사용(2600만 원 불용)
 - ※ 2001년에도 근로감독관 정원미달(153명)로 3억 4200만 원의 불용 발생
- 근로감독관 결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부 자체 결원(104명, '02년 5월 말 현재)이 충원되지 않은 면도 있으나
 - 당시 근로감독관 결원(152명)이 노동부 전체 결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지방관서장이 실업대책 등의 사업에 근로감독관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에 '03년 4월 지방관서의 부서별 정원초과 인원을 근로감독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70명을 충원한 바 있고
 - 앞으로도 근로감독관 인력충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근로감독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질의)

4. 자활직업훈련생의 중도탈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변)

- 자활훈련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하여 사전에 “직업적응훈련”을 이수토록 한 바,
 - 금년에는 작년보다 중도탈락률이 크게 하락하였음
 - ※ 중도탈락률 추이 : '02.12월, 18.8%→'03년 7월, 10.5%

(질의)

5. 자활직업훈련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변)

- 금년부터는 자활수당(10만 원)을 생계비 산정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훈련참여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주어 훈련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음

(질의)

6. 자활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실시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변)

- 현재 자활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자활직업훈련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특화된 훈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음

(질의)

7. 자활사업 중 직업적응훈련 및 자활구직세일즈의 경우 취업대상자를 과다 책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적정한 예측을 위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음

(답변)

- 동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규모 추계 및 면밀한 검토·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봄
-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자의 특성 및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업수요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 또한 동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도입, 자활 프로그램 내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 '03년 5월 보건복지부와 ‘자활정책기획팀(T/F)’ 구성·운영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추진('03년 8월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공동연구)

(질의)

8. 취업지원제를 통한 정규직 채용자의 40%가 1년 이전에 이직하여 고용유지성을 고려한 순고용 효과는 높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음

(답변)

- '02년도의 『취업지원제』 정규직 채용자(7495명)에 대한 고용유지 실태조사('03년 6월) 결과, 채용 1년 후에도 60.5%(4543명)가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
- 이러한 고용유지율 60.5%는 인턴이 아닌 일반근로자(30세 미만 청소년)의 채용 1년후 고용유지율 55~69%와 비슷한 수준임
- 향후 구직자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심층 상담을 통해 고용유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 9. 연수지원제 참가자가 단순 지원업무만 수행하여 연수지원제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변)

- 연수생의 대부분(실태조사 결과 75.8%)은 정규직의 업무 보조를 하고 있음
 - 연수생은 재학기간중 2~6개월의 단기간 직장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은 어렵다고 생각함
-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연수프로그램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기업연수 표준프로그램』을 제작·배포('03년 9월)하고
 - '03년부터 사전직무훈련 비용을 지원(1일 최대 100만 원)하고 있음

(질의)

- 10. 취업지원제 참여자 중 고졸 이하자나 중도탈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해결방안을 물으셨음

(답변)

- 현재의 취업지원제는 대졸, 고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 지난해 취업지원제 참여 인원 중 고졸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음
 - ※ 취업지원제 참여 인원 중 고졸자 : '02년 30%(3230명)
 - ※ 참고로 '99년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인턴 사업을 1만 명 목표로 시행하였으나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선발 1247명, 정규직 채용 649명)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음

- 앞으로도 고졸자 및 중도탈락자를 위하여 적극적인 취업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 11.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노동부의 엄정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여성다수고용사업장 및 민원유발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 '03년 중 의원급 의료기관 및 100인 이하 제조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 1026개소를 점검하여 690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기업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임을 홍보하여 동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인상,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수준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04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30→4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비용(10~15만 원) 지급 예정

(질의)

- 12.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활용 지원 방안을 물으셨음

(답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휴직기간 중 업무공백 및 동료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이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위하여 현행 육아휴직장려금(월 20만 원)에 추가하여 대체인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 ※ 300인 미만 기업(월 15만 원), 300인 이상 기업(월 10만 원)
 -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에 대한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

진해 나가겠음

(질의)

13. 전직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변)

○전직지원장려금 활성화를 위해

- 지원대상을 고용조정 이직자에서 정년퇴직자 등 비자발적 이직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 사업주 부담분 감소를 위해 소요비용 지원을 1/2(대기업 1/3)에서 2/3(대기업 1/2)로 상향 조정하고
-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노사가 합의토록 한 요건을 협의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겠음

(질의)

14.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 받을수 있는데, 재고용장려금의 경우 1회 160~200만 원을 지원하므로 기업이 재고용보다는 신규채용을 선호한다고 지적 하시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음

(답변)

○장기실업자(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간에 지급요건 등에 유사성이 있어

- 재고용장려금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비교> 장려금의 지급요건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에 의해 타사에서 채용시 지원
- 재고용장려금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실업기간 6개월후 2년 내 자사에서 재고용시 지원

(질의)

15.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개선 또는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음

(답변)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3가지 중 ‘여성재고용’ 및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아휴직장려금’(98%) 지원실적이 당초 예상보

다 크게 낮아 전반적인 지원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02년 41억 원 지원으로 목표(720억 원) 대비 5.7% 집행

○ 앞으로 육아휴직장려금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고,

※ 육아휴직급여(월30→40만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비용(월10~15만 원)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인 ‘여성가장’의 범위확대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질의)

16. 실적이 부진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제도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질의 하셨음

(답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 활용률이 저조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해 나가겠음

※ '03년 6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 92% 활용

(徐秉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해마다 동일한 사업에서 예산 불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우리부 예산 중 창업 및 취업훈련, 청소년인턴사업,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및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 불용액이 많은 것이 사실임

○취업촉진사업 중 취업 및 창업훈련과 청년인턴사업에서의 불용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부정확한 예산 추계 및 수혜자의 중도탈락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 중도탈락률 : 직장체험프로그램 23.3%, 직업훈련 18.1%

- 보다 정확한 예산 추계 및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개선해 나가겠음

○한편 여성가장훈련의 경우에는 여성가장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자활훈련 수

해대상과 중복되어 훈련참가인원이 감소한 점을 들 수 있음

※ 여성가장실업률 : '98년(5.0%)→'99년(4.3%)→'00년(2.6%)→'01년(2.6%)

※ 여성가장훈련생('02년 약2,500명) 중 자활훈련 대상자는 약 26%

- 실질적인 훈련수요를 감안하여 훈련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훈련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자활직업훈련의 경우는 자활취업대상자를 우리부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없고 자활대상자의 근로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가 미흡한 점이 예산비용의 주요 원인인 점을 감안하여

- 대상자의 확대, 근로유인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도입, 자활프로그램 내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03.5 보건복지부와 '자활정책기획팀(T/F)'을 구성운영중이며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임

○기타 이월액은 임차 및 용역계약 체결 지연,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인한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향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2. 취업지원제를 통한 정규직 채용자의 40%가 1년 이전에 이직하여 고용유지성을 고려한 순고용 효과는 높지 않다고 지적하셨음

(답변)

○'02년도의 『취업지원제』 정규직 채용자(7,495명)에 대한 고용유지 실태조사('03. 6월.) 결과, 채용 1년후에도 60.5%(4,543명)가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

○이러한 고용유지율 60.5%는 인턴이 아닌 일반근로자(30세 미만 청소년)의 채용 1년후 고용유지율 55~69%와 비슷한 수준임

○향후 구직자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심층 상담을 통해 고용유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3. 연수지원제 참가자가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기업실정에 맞는 연수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연수생의 대부분(실태조사 결과 75.8%)은 정규직의 업무 보조를 하면서 직장체험을 하고있음
- 연수생은 재학기간 중 2~6개월의 단기간 직

장체험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은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연수프로그램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기업연수 표준프로그램』을 제작·배포('03.9월)하고
- '03년부터 사전직무훈련 비용 지원(1일 최대 100만 원)하고 있음

(질의)

4. 자활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대상자 감소, 대상자의 특성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여건 확보 실패, 노동부 work-net과 보건복지부의 welfare-net의 정보공유 미흡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노동부의 대책,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의 협조 노력에 대해 물으셨음

(답변)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대상자 확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도입, 자활프로그램 내실화 등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 이를 위해 '03.5 보건복지부와 '자활정책기획팀(T/F)' 구성·운영중에 있고,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 ※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 추진('03.8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공동 연구)

- 동 개선안 마련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그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의 협조 관련해서는

- 자활담당자에 대한 '03년 사업계획 설명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03.1)하였고
- 고용안정센터와 지자체간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및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 수시로 상호 간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질의)

5. 직업상담원이 예산상의 정원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음.

(답변)

○직업상담원의 경우 신분불안,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자발적 퇴직률이 높아 결원이 계속 발생하였음.

- 결원에 대해 즉각 충원하지 못한 것은
 - 직업상담원이 비록 1년단위 계약직이기는 하나 상용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 충원을 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반영되지 못하면 다시 이를 해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또한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화가 급선무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충원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질의)

6. 근로감독 업무지도비에서 전용과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예산상의 지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며, 예산상의 근로감독관의 정원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음

- (답변)
- '02년도 근로감독관 정보활동비(1인당 월20만 원)를 지급하기 위해 24억 3600만 원(1015명)의 예산을 편성
 - 그러나 근로감독관 정원미달(152명)로 불용이 예상되어 3억 3600만 원을 자체 전용, 지방노동관서 인건비적 경비로 사용(2600만 원 불용)
 - ※ 2001년에도 근로감독관 정원미달(153명)로 3억 4200만 원의 불용 발생
 - 근로감독관 결원이 발생한 것은 우리부 자체 결원(104명, '02년 5월 말 현재)이 충원되지 않은 면도 있으나
 - 당시 근로감독관 결원(152명)이 노동부 전체 결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지방관서장이 실업대책 등의 사업에 근로감독관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 이에 '03년 4월 지방관서의 부서별 정원초과 인원을 근로감독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70명을 충원한 바 있고
 - 앞으로도 근로감독관 인력충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여 근로감독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질의)

7.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될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 (답변)
- '0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업무 처리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행정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재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보험업무는 공무원과 직업상담원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 ※ 고용안정센터 직원 현황('03년 6월) : 공무원 543명, 상담원 1622명
 - 일용근로자 확대에 대비한 행정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공무원 41명 증원 예정
 - ※ 우리부 행자부에 495명 요구 → 행자부 41인 인정(165명으로 산출하되, 나머지 인원은 '04년 업무량 변화 등을 고려 추후검토) → 예산처 41인 인정
 - 이들을 일용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 중심으로 배치 활용하고, 향후 부족한 인원은 내년초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확보 추진하고
 - 아울러, 신고용보험시스템 도입, 업무처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력수요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음
 - ▲ 피보험자격 신고주기 완화 : 입·이직마다 → 월 1회
 - ▲ 신고서식 통합 : 3개(취득·상실·이직확인서) → 1개(근로내역확인서)

(질의)

8. 고용허가제에 의해 도입되는 외국인근로자는 누구에게 관리를 맡길 것인지 물으셨음.

- (답변)
-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업무는 크게 고용허가 업무, 도입업무, 사후관리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 국내 근로자 구인노력(1개월) 확인 및 취업알선, 인력부족 확인서 발급, 외국인구직자 추천, 고용허가서 발급 등 고용허가 업무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직업상담

원 또는 공무원)

-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방문, 고용허가취소 및 외국인고용제한조치, 과태료 부과·처분, 외국인근로자 신고사건 처리 등 사후 관리업무는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와 근로감독과에서 수행(공무원)
-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업무(근로계약체결 대행,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등), 외국인구직자 명부작성 및 관리, 외국인근로자 전산시스템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 도입지원 업무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수행

○외국인근로자 도입·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 본부에 36명, 지방노동관서 505명 등 총 541명 증원을 추진(행정자치부와 협의중)
 - 본부에 외국인력정책 및 관리업무 총괄을 위한 3개과(36명) 체제의 “외국인력정책국” 신설
 - 지방노동청(6개청)에는 청 관내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외국인고용과(66명)를 설치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인력(439명)을 증원
-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담인력은 58명(정규직 : 33명, 계약직 : 25명)을 증원 예정

(질의)

9.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은 누구에게 감독을 요청할 것인지를 물으셨음

(답변)

- 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는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고 있음
- 앞으로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 결원충원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근로감독관의 증원도 추진하겠음
- ※ 현재 행정자치부에 근로감독관 증원요청중

(질의)

10.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급휴가 훈련기간의 완화, 지원금액의 사업체 규모별 차등적용 및 단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한 근로자의 훈련참여 동기부여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변)

□ 현황 및 문제점

-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및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임금지원 등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우대를 하고 있으나,
 - 여유인력의 부족,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 등으로 훈련참여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임
- <중소기업의 사업주 훈련참여 현황(150인 미만)>
(단위 : 천명, %)

구 분	'00	'01	'02	'03.7
총훈련인원(A)	1,220	1,555	1,585	991
중소기업참여인원(B)	166	182	291	132
중소기업비중(B/A)	13.6	11.7	18.3	13.3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참여 현황(150인 미만)>
(단위 : 명, %)

구 분	'01	'02	'03.7
총훈련인원(A)	8,611	5,963	3,417
중소기업참여인원(B)	126	505	343
중소기업비중(B/A)	1.5	8.5	10

□ 향후계획

-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수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훈련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임.
 - ※ 소규모기업의 비용지원한도 인상 : 150만 원 → 250만 원
 -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운영기관을 현행 13개에서 '03년 말 20개, '04년 28개로 확대
 - 또한,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권고하신 유급휴가 훈련기간의 탄력적 적용과 소규모기업에 대한 임금보전 수준의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
- 단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04년부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말과정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
- ※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50세이상, 50

인미만 기업의 근로자 → 40세이상, 300인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

※ 주말과정 운영시 훈련과정 승인요건 완화, 훈련기관 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질의)

11.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의 9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므로 CLEAN 사업장조성지원사업과 성격이 상호 중복되고,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 각각 유상융자와 무상보조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두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가, 아니면 사업별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노동부의 정구상은?

(답변)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은 업종·규모에 제한 없이 사업장의 투자계획에 의해 개별설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 융자대상 품목 598개 중 사업장의 신청품목에 대해 지원

- CLEAN조성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종합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그 성격이 같다고 말할 수 없음

※ 57개 항목의 유해위험 요인을 모두 제거하여야만 보조금을 지원

○따라서 5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융자·보조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질의)

12.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융자사업의 부진에 대하여 노동부의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융자사업이 부진한 것에는 IMF 이후 경영악화로 중소기업의 복지시설 투자가 축소되었고, 융자 적격자로 선정되더라도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융자받는 비율이 낮아 데에 주로 기인함

- 융자금리(6%)가 중소기업의 시설·창업자금 대부 금리나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금리와 비

슷한 수준인 점도 사업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우리부에서는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03년도에 복지시설의 범위에 통근차량 구입, 사내교육 시설설치 등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실적이 부진함 ('03년 1월~8월 실적 3개소 2억 3700만 원)

- 한편 융자금리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금리수준이 높지 않다는 기금관련 부처의 반대로 현 수준이 유지되었음

○이에 우리 부에서는 동 사업을 '03년도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04년도부터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도 같은 지적을 한 바 있음

○'0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13. 실직여성가장창업점포지원 부진사유 및 대책

(답변)

○ 실직여성가장창업지원은 그동안 사업재원을 조달금리가 높은 채권발행 자금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 원리금 상환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금리(7.5%)를 적용해 왔으며

- 국내경제의 불투명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창업불안감 등이 겹쳐 창업희망자가 감소하면서 사업이 다소 부진하였음

○ 앞으로는 그동안 높은 조달금리를 부담해오던 차입자금을 금년 7~8월중에 모두 상환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 또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전세권 설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현재는 수요자 부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가입케 하였으나 보험료의 과부담으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질의)

14. 자영업창업 업종편중 해소 등 사업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음.

(답변)

○자영업창업지원사업은 실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40~50대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생계형 창업지원으로, 지적하신 대로 요식업 및 도소매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2003년 7월 현재 3106건 중 요식업 및 도소매업 1633건으로 52.6%

○이는 중·장년층의 경우 창업이 용이한 업종을 선택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창업사업의 다변화·다양화를 위해 지역별 수요 등을 감안 창업성공률이 높은 업종 개발에 주력하고,
- 아울러 사전 창업상담, 사후 경영지도, 창업보수교육 등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임.

(吳世勳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창업 및 취업훈련지원사업, 자활직업훈련사업,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등 주요사업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시 수요일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 물으셨음

(답변)

- 주요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규모 추계 및 면밀한 검토·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봄
-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자의 특성 및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업수요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손在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직업상담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데도 상담원을 충원하지 않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하셨음.

(답변)

-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 등 상담원의 고유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상담원은 비록 1년 단위 계약직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 충원 계획은 장기적 시각에서 결정되어야 함.

○또한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화가 급선무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충원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질의)

2. 직업상담원 인건비의 상당부분이 불용되고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셨음.

(답변)

- 상담원 인건비가 불용된 것은 결원분에 대해 즉각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불용이 발생함에도 즉각 충원을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 직업상담원이 비록 1년 단위 계약직이기는 하나 계약갱신을 통해 상용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 예산이 남는다 하여 직업상담원을 충원할 경우, 충원된 인원에 대해 다음연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 다시 이를 해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용하게 된 것은
 - 직업상담원 결원운용으로 이·전용시점(11월 18일, 11월28일)에서는 불용이 명백한 상태였고, 공무원 인건비와 직업상담원 인건비는 노동부 직원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는 법정기준에 의해 지급액이 정해져 있어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부족과 직업상담원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음

(질의)

3. 한국노동교육원 강의동 증축과 관련하여 '02년도에 10억 원이 불용되었음. 이는 '01.1.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증축의 추진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물으셨음.

(답변)

- 우선 관련법령의 변경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증축사업을 추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14조(자연보전권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제4호 나목 :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및, 연수 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것(삭제 '01.1.5)

○그러나 다양한 교육수요의 증가와 설계당시('93년) 예상치 못했던 노동행정공무원 교육위탁에 따른 강의실·토의실 등의 부족으로 관련시설의 증축은 불가피한 실정임.

※ '99.2.8 노동행정공무원 위탁교육기관 지정(한국노동교육원법, 법률 5879호), 공무원교육비 중('01년 2,022명 20.7%, '02년 2,459명 16.5%)

○현재 건설교통부가 시행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부 입장을 적극 반영, 시행령 개정 후 증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 '03.6.12 우리부 의견 제출, '03.7.5 입법예고 - 올해안에 시행령 개정 불가 시 기존시설의 유지보수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 축대 등 위험시설 보강,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기숙사·강의시설 개선 등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관련법령 및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4. 집행실적이 20.5%로 부진한 자활구직세일즈 사업처럼 의욕만 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음

(답변)

○동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규모 추계 및 면밀한 검토·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봄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자의 특성 및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업수요 추계를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洪在馨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자활사업이 급여체계의 한계 및 조사 미비로 실적이 부진함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변)

○자활사업의 집행부진은 급여체계 문제, 자활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미비 등도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함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자활정책기획팀'을 구성('03년 5월)하여

- 금년말까지 급여체계, 전달체계 등 자활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공동연구 의뢰('03년 8월)

(답변)
2. 자활직업훈련의 취업률이 13.2%에 불과하는 등 그 성과가 부진함을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음.

(답변)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는 바,

- 금년부터는 훈련 참여전 "직업적응훈련" 이수 를 의무화하여 훈련생의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 자활수당(10만 원)을 생계비 산정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훈련참여자의 실질소득을 높여주어 훈련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음

※ 현재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임('02년 12월 말 12.7%→'03년 7월 말 19.6%)

○앞으로도 훈련생 특성에 따른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과정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아울러 직업이동경로에 대한 조사 및 일자리 유 지율 등의 통계 관리방안 도입에 대해서는 행정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3. 고용보험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적립금을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기금 수입·지출계획에 포함 운영하고, 이를 통한 운영규모와 이자수입 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추계로서 적립금과 예탁금 회수액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볼 수 없어 그동안 기금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관점에서 '04년도

부터는 예탁금 회수액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켰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운용규모와 이자수입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음

(질의)

4. 기금수입의 과소계상 지출의 과대계상에 따라 결과적으로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적립금 자금을 단기로 운용하게됨으로써 기금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운용을 통해 기금수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답변)

- 그간 기금수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수입을 보수적으로 지출은 다소 적극적으로 편성한 부분도 있으나
 - '03년도부터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장기운용 비율을 '02년 13.6%에서 금년에 15.6%로 늘려가고 있으며
 - 수입과 지출수요를 고려한 적정 장·단기자금 추계를 위하여 현재 한국채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장기운용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음.

(질의)

5. '02년도 산재진료비 심사결과 허위·부당청구액 및 착오청구액이 전년대비 3.5배 증가하고 있고, 심사기관 대비 적발비율이 높으므로 심사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음

(답변)

- 진료비 심사대상을 선정할 때 ①다른 진료기관보다 1인평균 진료비가 높은 경우, ②진료비 심사시 착감율이 높은 경우, ③제보·진정이 있는 경우 등은 허위·부정 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적발비율이 높은 편임.
 -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인력형편으로 볼 때(6개 지역본부 총 66명이 담당) 대폭적인 심사대상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음.
- ※ '02 심사대상 : 5382개소 중 184개소

(질의)

6. 산재지정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건강보험 허위·부정청구로 적발된 경우 의무적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심사자료와 심사기법 공유 등 양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음

(답변)

- 지금까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심사방법 및 심사대상기관 선정이 서로 달라서 그동안 심사자료 공유 효과는 미약하였음.
-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지정병원에서 건강보험의 허위·부정청구로 적발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음.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

(金樂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의)

1. 고용·산재보험 홍보예산이 2001년 61억 원에서 2002년 8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홍보비 증액이 적용·징수 실적제고에 기여하였는가?

(답변)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에 사용한 홍보예산은 '01년도 총 61억 원, '02년도 80억 원이었으며
 - 그중 적용·징수와 직접 관련한 홍보비로 '01년도 6억 원, '02년도 11억 원을 사용하였음.
- 이러한 적용·징수 관련 홍보를 통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가입 의식 제고 등 노력과 함께
 - 국세청 및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활용을 통한 누락사업장 발굴 및 가입조치,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누락 중점 조사,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5월, 10월) 운영 등의 노력을 적극 경주하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징수액)이 '01년 807천개(2조 5485억 원) → '02년 826천개(2조 7433억 원)으로 2.4%(7.7%) 증가하였고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징수액)도 '01년 909천개(2조 3319억 원), '02년 1002천개(2조 7156억 원)으로 10.2% (16.5%) 증가하였음.